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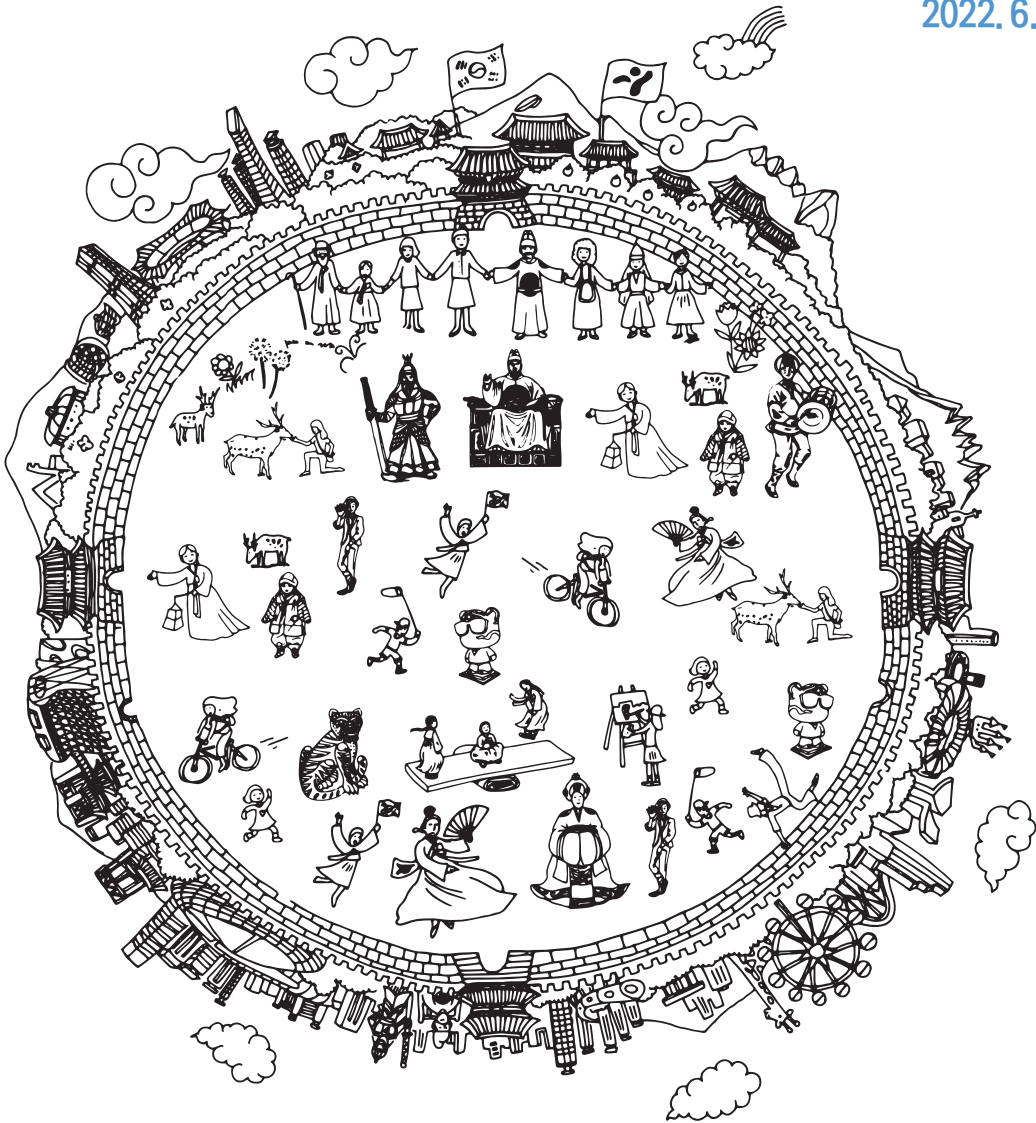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90호
2022. 6. 24.(금)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186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2-187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공 고

제2022-18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지형도면) 변경 열람공고(경미한 사항) 6

◆ 구 고 시

제2022-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9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6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 청원 업무 관련 사무분장과 기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정비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2항)

-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

· 민생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나.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14조)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다. 「청원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안 제16조 및 제142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 '청원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공개정책과 내 '청원 배부·관리' 사무 삭제

라.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등 조문 정비(안 제27조 및 제28조, 제39조)

- 미래혁신원장·부원장 및 대학본부 5개 부처장 겸보대상 중 '조교수' 삭제

- 부설연구기관 설립근거를 시행규칙 → 학칙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조문정비

마. 보건환경연구원 하부조직 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이관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

- ‘연구지원부 → 운영기획부’ 명칭변경
- 식품·의약품 미생물의 시험·검사 업무를 질병연구부 → 식품의약부로 이관
- 질병연구부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사무분장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7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정원 감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법정 인력 증원,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등 서울시 총 정원을 19,138명에서 19,139명으로 1명 증원하고, 그 외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 존속기한 : ' 21. 8. 19. ~ ' 22. 8. 18.(1년) / 최초설치 : ' 16. 8. 19.

나. 「공직선거법」 개정(' 22. 4. 20.)에 따른 법정 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 (+1)**

다.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6명)

－ 사육운영 6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농지7급 △2,

농업또는농지8급 △1, 농업또는농지9급 △1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4,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2

라.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직렬·직급간 정원조정(51명)

- 사무운영·기계운영·통신운영·농림운영 등 6급이하 △51
→ 행정·시설관리·방송통신·녹지 등 6급이하 +51

마. 행정수요 증가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간 정원 조정(41명)

- 행정·공업·보건·간호·방송통신·수의 등 6급이하 △23 → 5급 +23
- 환경연구사·보건연구사·수의연구사 각 △1 → 환경연구관·보건연구관·수의연구관 각 +1
- 전산8급 △14 → 전산7급 +14
- 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 △1 → 다군(고압가스)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지형도면) 변경 열람공고(경미한 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4호(2010.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9호(2013.5.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05호(2013.7.4.), 제2014-352호(2014.10.16.), 제2015-44호(2015.2.17.), 제2020-130호(2020.4.2.), 제2021-729호(2021.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25조 및 제97조 규정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지형도면) 변경 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이 해관계자 및 주민에게 열람공고 합니다.
4.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성원APT ~ 노원구 상계동 상도교(의정부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6	21~30	주간선 도 로	19,645	성수1가동 (용비교)	상계동1200-4 (서울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 89.5.18)	
변경	대로	2	86	21~30	주간선 도 로	19,645	성수1가동 (용비교)	상계동1200-4 (서울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대로	3	60	21~35	보조간선 도 로	9,250	월릉교 (대1-13)	도봉동시계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 71.4.7)	
변경	대로	3	60	21~35	보조간선 도 로	9,250	월릉교 (대1-13)	도봉동시계	일반도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2-86호선	대로2-86호선	◦ L = 19,645m, B = 21-30m	• 동부간선도로(도봉지하차도 관리동 시설) 편입에 따른 폭원 변경(지형도면 참조)
변경	대로3-60호선	대로3-60호선	◦ L = 9,250m, B = 21-35m	• 사유지 제척에 따른 폭원 변경 (지형도면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공고일 ~ 2022년 7월 3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79) 및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2133-8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22-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6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60(2020.6.11.)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20-69(2020.6.25.)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534-225번지 일원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34-2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258㎡(당초 197㎡)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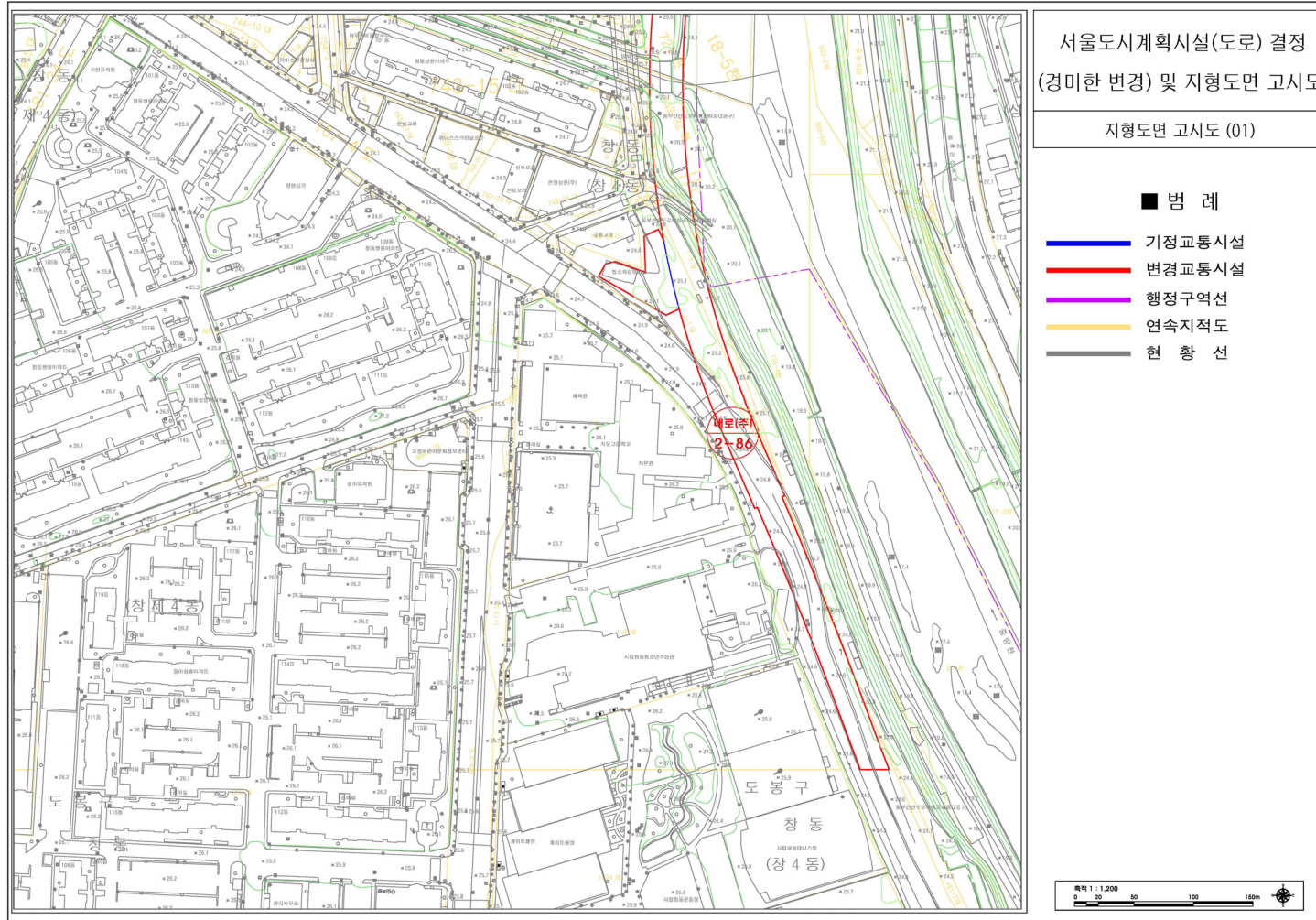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일로부터 5년간(2020.06.11. ~ 2025.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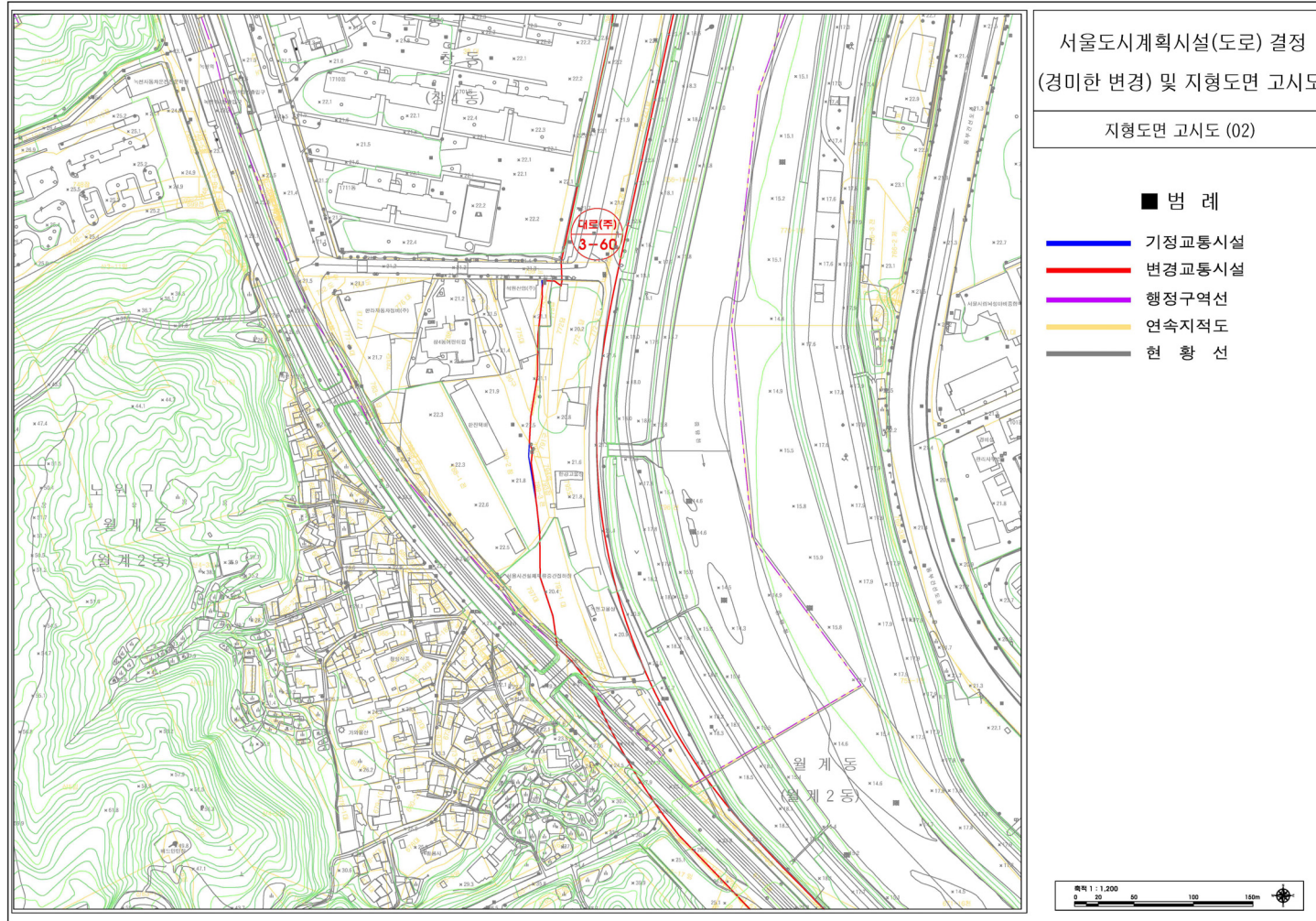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36)

자. 변경내용 : 사업기간 및 사업 면적변경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불입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